

【붙임 이

기업명:

2026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 - 참여신청서류 체크리스트 -

※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(이하 “지원사업”으로 표기함) 참여신청 서류는 원본 또는 직접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,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 (*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)

※ 이하의 제출 서류를 준비 후 제출 여부 체크란에 “V” 또는 “O” 표기하세요.

☐ 참여기업 준비서류

구분	구비서류	제출여부	비 고 (작성요령)
1	필수 (붙임1) 지원사업 참여신청서	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- 지원이력이 없을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승인 - 지원이력이 있을 경우(1회이상)
2	필수 (붙임2) 지원사업 참여청년 명단		붙임양식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
3	필수 (붙임3) 지원사업 활용계획서		붙임양식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
4	평가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*		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
5	선택 사업자등록증*		신규기업 필수, 승인기업 변경내용 있을 시 (원본대조필 날인)
6	필수 법인등기부등본(법인기업)		법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
7	필수 중소기업확인서 (유효기간내)		SMINFO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) 유효기간 내 (원본대조필 날인)
8	필수 납세증명서		국세청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
9	필수 지방세 납세증명(신청서)		정부24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
10	필수 매출액 증빙서류(2025년)		국세청 25년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11	평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가입확인서*		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
12	평가 근로환경 개선 관련 인증서*		가족친화인증, 청년친화강소기업,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재육성형중소기업,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,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, 정주여건개선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, 클린사업, 근무혁신우수기업

☐ 참여근로자 준비서류

구분	구비서류	제출여부	비 고 (작성요령)
1	필수 (붙임5) 지원사업 참여자 서약서		대표자: 직인 / 근로자: 자필서명
2	필수 (붙임6)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		근로자: 자필서명
3	필수 (붙임7) 지원요건 확인서		붙임양식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
4	필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		25년 기준 출력
5	필수 주민등록초본		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 (※ 반드시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행)
6	필수 근로계약서 사본		입사일 및 임금 확인 증빙(원본대조필 날인)
7	필수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		지원금 받을 통장계좌(원본대조필 날인)

【붙임 2】

2026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 신청자 명단

기업명	사업자등록번호
소재지	

신청자 명단

구분	성명	생년월일	입사일	배치부서	담당직무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
※ [붙임] 참여신청서 상의 지원신청 총인원(A+B)에 대한 세부 명단으로 기재
- 기업당 최대 승인가능인원 5명(기존 지원인원 포함)

위와 같이 2026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 참여대상자 명단을 제출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제출기업명 :

대표자 :

(인)

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귀하

【붙임 3】

2026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 활용계획서

※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되, 형식은 자율적으로 작성 (2페이지 이내)

1. 기업 현황

- 회사소개(주요연혁)

- 사업장 현황
 - 조직도, 사업내용, 주요생산품 등

2. 지원사업 활용계획 (구체적으로 기재)

- 지원의 필요성(참여의지)

- 청년근로자 관리방법
 - 관리자 배정, 근로자 복지, 장기근속 유도방안 등

- 기대효과

3. 기타 사항

- 기업 인증, 기술력 및 특허현황 등 (선택)

【붙임 4】

2026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 참여서약서

2026년도 『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』에 참여 신청한 기업(사업주) 및 청년근로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.

1. 승인기업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여 청년근로자의 근태관리 등 고용유지와 지원금 신청에 협조한다.
2. 청년근로자는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성실히 근로하고, 직장 적응과 자기개발을 통해 장기근로를 위해 노력한다.
3. 본 사업 지원기간 중 발생하는 근로관계 등에 대한 문제는 기업과 근로자간 협의하며, 충청북도와 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.
4. 청년근로자 지원금 지급은 제출서류 검토와 적격 여부 조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금이 미지급될 수 있다.
5. 지원금 지급 후에라도 환수사항 발생(사후확인 포함)시 귀책사유에 따라 청년근로자(또는 사업주)는 기 지급 받은 근속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.
6. 승인기업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(지원금 신청 및 중단 사유 발생알림, 지도점검 등)에 2회 이상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,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.

위 사항과 사업공고 내용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 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서약인① : 기업명

대표자 성명

(직 인)

서약인② : 직 책

근로자 성명

(자 필 서 명)

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귀하

